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 규정의 상향 입법 등〉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11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제220391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 규정의 상향 입법 및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 추가(안 제33조의2)	2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11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한 자동차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전기차 보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 규정의 상향 입법 및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 추가(안 제33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 ----- ----- ----- ----- <u>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u> ----- ----- ----- -----.
<u><신 설></u>	1. 충돌 안전도
<u><신 설></u>	2. 외부통행자 안전도
<u><신 설></u>	3. 사고예방 안전도
<u><신 설></u>	4. 구동축전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차로 한정한다</u>) 안전도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3조의2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¹⁾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안전도평가 분야를 충돌안전성 분야,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²⁾

1)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2) 「자동차안전도평가지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안전도평가 분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분야를 구분하며, 각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돌안전성 분야

그런데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현행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에는 배터리 안전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2024년도부터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의 상시 이상감지, 운행·충전주차 중 이상발생 시 경고기능 등을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기술규정」상 세부평가항목에 포함하여 배터리 안전도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정안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측면이 있음.

또한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을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정할 경우 향후 평가분야 신설·변경 소요 발생시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2.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
 - 3.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기술규정상 전기차 안전성 평가 반영 내용 >

항 목	기 능																				
구동축전지 상태 상시감지 (1.0점)	○ 구동축전지 주차 중 모니터링 기능의 작동시간 간격에 따라 배점 차등적용(1h : 0.6점 2h : 0.7점 4h : 0.8점 6h : 0.9점 8h : 1.0점) ○ 간헐적 모니터링은 시간당 0.01점 인정(wake-up 간격 10분 이하 시) ○ 구동축전지 이상 발생 시 미작동 중인 BMS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상시 모니터링 미적용 차종) : 1.0점																				
구동축전지 이상발생 경고 (1.0점)	○ 운행·충전·주차 중 구동축전지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1.0점) <table><tr><th>구 분</th><th>차주 경고</th><th>관계기관 신고</th><th>계</th></tr><tr><td>운행 중</td><td>0.1</td><td>0.15</td><td>0.25</td></tr><tr><td>충전 중</td><td>0.1</td><td>0.15</td><td>0.25</td></tr><tr><td>주차 중</td><td>0.2</td><td>0.3</td><td>0.5</td></tr><tr><td>계</td><td>0.4</td><td>0.6</td><td>1.0</td></tr></table>	구 분	차주 경고	관계기관 신고	계	운행 중	0.1	0.15	0.25	충전 중	0.1	0.15	0.25	주차 중	0.2	0.3	0.5	계	0.4	0.6	1.0
구 분	차주 경고	관계기관 신고	계																		
운행 중	0.1	0.15	0.25																		
충전 중	0.1	0.15	0.25																		
주차 중	0.2	0.3	0.5																		
계	0.4	0.6	1.0																		
구동축전지 정보저장 (0.2점)	○ 주차 중 구동축전지 열폭주 발생 시 구동축전지 온도 및 상태 정보 등 저장(0.1점) 및 백업(0.1점)																				

자료 : 국토교통부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의견

1)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도평가에 구동축전지의 안전성 평가를 시행 중으로 개정 실익이 낮고 충돌안전성 등 평가 항목은 하위 법령에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을 법률에 정할 경우, 평가분야 신설·변경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적기에 평가항목 적용이 곤란함.³⁾

3)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기술규정」(누리집 공개)에 정하고 있음

2)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전기차안전성 항목을 既운영 중이므로, 현행 제도로 충분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12개 배터리 시험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작 중이며, 배터리 사전인증제도('25.2.) 및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 예정임.

그리고,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세계 최초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를 제공하고('22~'23년), '24년부터 배점항목으로 이미 평가 중임.

3)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현재도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제1항을 근거로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고시) 및 '자동차안전도평가지침 등에 관한 기술규정'에 따라 안전도평가를 시행 중이며,

전기자동차안전성 분야에 대한 평가를 '24년부터 시행 중으로, 현행 법령으로 충분히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자동차안전도평가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안전도평가 분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분야를 구분하며, 각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돌안전성 분야
2.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
3.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중 략)

제12조(기술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이하 "기술규정"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자동차 및 세부 평가방법
3. 종합등급 세부 산정방법
4. 재시험, 제작자 요청시험 등 세부 시행방법
5. 평가결과 활용 검토방법
6. 기타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2

신차안전도평가 개요 및 전기차 안전성 평가

□ 자동차안전도평가 개요

- (목적) 충돌, 보행자, 사고예방 안전성 등 3개 분야(21개 항목)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결과를 공개, 제작사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평가) 및 시행규칙 제53조

- (추진일정) 평가('24.3월~) → 자동차안전도평가 컨퍼런스 결과보고(12월)

□ 전기차 안전성 평가 반영 내용[24년 신설]

- (등급산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능동안전 보호기능을 2.2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별등급 부여*

* ★5 : 80.1~ / ★4 : 70.1~80.0 / ★3 : 60.1~70.0 / ★2 : 50.1~60.0 / ★1 : ~50.0

- (평가항목) 주차 중 배터리 ①상시 이상감지(1.0점) 및 운행·충전·주차 중 ②이상발생 시 경고(1.0점), ③상태 정보 저장(0.2점) 항목 평가

항 목	기 능																				
구동축전지 상태 상시감지 (1.0점)	○ 구동축전지 주차 중 <u>모니터링 기능의 작동시간 간격</u>에 따라 배점 차등적용(1h:0.6점 2h:0.7점 4h:0.8점 6h:0.9점 8h:1.0점) ○ 간헐적 모니터링은 시간당 0.01점 인정(wake-up 간격 10분 이하 시) ○ 구동축전지 이상 발생 시 미작동 중인 BMS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상시 모니터링 미적용 차종) : 1.0점																				
구동축전지 이상발생 경고 (1.0점)	○ 운행·충전·주차 중 <u>구동축전지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u>(1.0점)<table><tr><td>구 분</td><td>차주 경고</td><td>관계기관 신고</td><td>계</td></tr><tr><td>운행 중</td><td>0.1</td><td>0.15</td><td>0.25</td></tr><tr><td>충전 중</td><td>0.1</td><td>0.15</td><td>0.25</td></tr><tr><td>주차 중</td><td>0.2</td><td>0.3</td><td>0.5</td></tr><tr><td>계</td><td>0.4</td><td>0.6</td><td>1.0</td></tr></table>	구 분	차주 경고	관계기관 신고	계	운행 중	0.1	0.15	0.25	충전 중	0.1	0.15	0.25	주차 중	0.2	0.3	0.5	계	0.4	0.6	1.0
구 분	차주 경고	관계기관 신고	계																		
운행 중	0.1	0.15	0.25																		
충전 중	0.1	0.15	0.25																		
주차 중	0.2	0.3	0.5																		
계	0.4	0.6	1.0																		
구동축전지 정보저장 (0.2점)	○ 주차 중 구동축전지 열폭주 발생 시 구동축전지 온도 및 상태 정보 등 저장(0.1점) 및 백업(0.1점)																				